



일본의 신규취농을 위한 정책 방향

김 홍 우
(주일 농무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농가 인구의 감소, 고령화, 경작포기에 따른 농토의 황폐화 등에 대응하여 신규 취농 인구의 증대를 목적으로 1987년부터 사업 실시
- 신규 취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농지 등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및 알선, 취농 상담원의 배치, 연수대상농가의 소개 등
- 최근에는 고용불안, 회사형태의 농업법인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4~50대 중년층의 농촌지향성 등을 배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추진경과

- 전국단위로서 '87년 공익법인인「전국농업회의소」내에「전국취농가이드센터」를 설치하였음.
- 한편 지자체는 현청(縣廳)의 농지업무를 취급하는「농지이용 상담센터」에서 농지유동화업무와 병행하여 취농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
- 「신정책」이 시작된 '92년부터 제도를 재정비하여 현지 농지소개 등에 머물던 지원기능을 농업체험, 연수, 취농 알선까지로 확대
- '94년「청년 취농을 위한 자금융자 특별법」을 제정하여 자금지원의 근거 마련
- '98년부터 농지업무와 병행하던 지자체(현단위)의 신규취농업무의 자주적 취급을 위해「도도부현 신규취농가이드센터」 별도 설립

- '99년부터는 기존의 자영농을 중심으로 하던 취농사업에 농업법인 등에 대한 취업알선사업을 추가(농업법인상담회, 신규취농세미나, 신규취농상담회를 도쿄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순회 개최)
- '04년 자금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취농자금지원, 자금상환기간(10년→12년) 및 거치기간(3→5년)연장, 취농센터의 상담관련 수입에 대한 손금산입 인정을 추가

2. 현지의 사업성과 평가

- 사업시행 초창기에 비해 취농인력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내용면에서 크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현지 평가
- '03년의 경우 신규 취농자(80.2천명)중 신규학졸 취업자는 2.2천명에 불과
- 취농 통계 자체가 동거 유무를 불문하고 타 산업에서 농업으로 전환한 경우 취농자로 계산하고 있는 점, 부부 등 동거가족을 별도 취농 인구로 간주하고 있는 점 등 중복문제 내포
- 전국 취농상담센터의 취농후 생활에 대한 '01년 조사결과 농업소득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26%에 불과('96년 52.4%에 비해 악화된 수준)
- 한편, 경제불황의 영향에 따른 조기 정년퇴직 등 고용불안으로 다양한 경험을 갖춘 타산업 종사자의 취농이 침체된 농촌활력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있음.

신규 취농자 동향

(단위 : 천명)

구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신규취농청년(39세이하)	4.3	4.8	4.9	6.5	6.3	7.6	8.5	9.7	11.1	11.9	11.6	11.7	11.9	11.9
신규學卒취농자	1.8	1.7	1.7	1.8	2.1	1.8	2.0	2.2	2.2	2.0	2.1	2.1	2.2	2.2
이직취농자(39세이하)	2.5	3.1	3.2	4.7	4.2	5.8	6.5	7.5	8.9	9.9	9.5	9.6	9.7	9.7
증장년(40세이상 이직취농자)	11.4	16.4	16.0	24.6	32.5	40.4	42.5	47.0	53.2	53.5	65.9	67.8	68.0	68.3
청년등취농법상의 증장년(40-64)	10.7	14.4	13.5	20.2	24.7	30.1	28.9	32.1	38.2	47.2	40.4	44.3	45.6	46.5
65세이상	0.7	2.0	2.5	4.4	7.8	10.3	13.6	14.9	15.0	6.3	25.4	23.5	22.4	21.8
합 계	15.7	21.2	20.9	31.1	38.8	48.0	51.0	56.7	64.2	65.4	77.1	79.5	79.8	80.2

※ 참고자료 : 농림수산성 「농업구조동태조사」, 「농업센서스」 등

(주) 1. 「이직취농자」는 다른 산업에서 농업 종사로 주근무를 바꾼 사람을 말한다. (재택, U턴 불문. 증장년층의 이직취농자 중에는 타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에 도 종사했던 사람이 퇴직으로 농업에 주종사하게 된 인원이 포함됨).

2. 1991년 이후는 「판매농가」만의 조사치임.

신규참여재(농가후계자 이외의 취농) 상황

(단위 : 명)

항목 \ 년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신규참여재	69	79	126	191	167	251	342	353	330	460	460	530

※ 참고자료

- 1998-2001년도는 농림수산성 「농림어업에의 신규취농자에 관한 정보수집」에서 참조
- 1985년 및 1993-97년도는 각 都 · 道 · 府 · 縣의 조사를 농림수산성에서 집계
- 1990-92년도는 농림수산성 「신규 청년취농자 등 긴급조사」에서 참조

3. 사업추진체계 및 자금지원

가. 사업추진체계

- 농림수산성은 자금지원, 사업시행은 지자체, 공익법인인 전국농업회의소, 민간교육훈련기관 등이 분담하여 추진
- 농림수산성은 창업관련 자금지원, 취농상담 사업비의 보조, 각종자체사업을 취농사업과 연계
- 지자체는 창업자금지원, 상담창구 운영, 취농자금 지원 및 회수 등의 업무를 담당
- 농업회의소내 취농 상담센터(중앙 및 47개현에 설치)에서 창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취농 알선(농지매입 등)업무를 수행

■ 일반적 취농절차

- 전국 및 도도부현의 취농상담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 및 기초지식의 취득
- 작목선택 등 경영비전의 명확화 및 관련기술 및 노하우의 습득, 생산 · 판매계획 등 영농계획의 작성
- 자금확보 및 농지, 주택확보, 기계 · 시설의 확보
- 취농하는 시정촌의 농업위원회에 농지취득(임차포함)수속 및 허가를 받아 영농 시작

나. 자금지원

- 취농용자자금 지원(무이자)
- 도도부현지사에게 취농계획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자에 대해

취농지원자금 내용

(단위: 명)

구 분	취농연수자금	취농준비자금	취농시설등 자금
자금종류	농업기술 또는 경영방법을 실제로 습득하기 위한 연수 필요 자금	주거이전, 자격취득, 취농처의 조사 등 취농 준비에 필요한 자금	농업 경영 개시로 필요한 기계·시설의 구입 등의 필요 자금
대부주체	都道府県 청년농업자등 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都道府県 청년농업자등 교육센터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대부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대학교 등 →5만엔/월 선진농가 등 →15만엔/월 지도연수(청년) →200만엔 	200만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2,800만엔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00만엔 또는 필요한 금액의 1/2보다 낮은 액수 중장년 →1,800만엔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00만엔 또는 필요한 금액의 1/2보다 낮은 액수 ※ 경영개시 후 5년간
상환(거치) 기간	청년 12(4)년 이내(조건불리지역 20(9)년 이내) 중장년 7(2)년 이내(조건불리지역 12(9)년 이내)		12(5)년 이내
기 타			채무보증 대상

자료: 농림수산성

3종류(취농연수자금, 취농준비자금, 취농시설등자금)의 자금용자
- 특별회계로 운영, 실제 자금 미회수 등의 책임은 지자체(県)에서 맡고 있음.
- 전체소요자금중 2/3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1/3은 지자체(県과 市町村)가 분담하여 지원(취농 시설관련자금에 대해서만 담보 설정)

다. 관련자금 보조 등('04예산)

■ 기술습득·영농체험지원

- 전국 및 도도부현의 취농상담센터의 상담, 농업법인 취업 알선, 정보제공(홈페이지), 선배취농자의 컨설팅비 등 보조
 - 전국단체사업: 118백만엔 - 지자체의 취농상담창구정비사업: 358백만엔
- 도도부현의 농업대학 등에 U턴취농자, 실업자 직업훈련코스 교육훈련 위탁사업비 및 관련 교육시설비 지원

- (신규취농·취업경력형성 훈련비 지원: 97백만엔, 농업연수·농업종합지원센터 시설정비사업: 1,009백만엔)
- 민간단체, 도도부현에 개설하는 취농준비학교(민간)등에서 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영농교육비 지원 (민간단체사업: 64백만엔, 취농·취업지원사업: 97백만엔)
- 선진경영체(농업법인, 농업지도사)에서 실시하는 현장연수 지원 (전국농업단체: 118백만엔)
- 신규취농을 촉진하기 위한 연수용 실습농장, 실습시설, 숙박체제시설의 정비 지원 (경영대책사업비: 17,667백만엔)
- 축산취농 촉진을 위한 연수목장의 정비, 선진농가 연수실시비 지원

- (축산경영활성화사업 : 734백만엔)
- 도도부현농업대학의 취농관련 연구활동 및 농업고교 연계활동 지원
(취농 · 취업지원사업 : 97백만엔)
 - 보급센터(농업기술지원센터)등에 의한 일상적 기술 · 영농지도
 - 보급센터의 개별 취농자지도, 청년농업자 조직육성, 자주적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
(협동농업보급사업교부금 : 234백만엔, 혁신적기술도입 경영체제지원사업 : 330백만엔, 취농 · 취업지원사업 : 97백만엔)
 - 다양한 신규취농자에 대응한 보급활동의 고도화, 취농환경의 정비, 실천적 노하우 등 경영정착지원 (취농 · 취업지원사업 : 97백만엔)
 - 초 · 중학생의 체험학습, 고교생 · 대학생 등의 취업체험
 - 농업고교생에 대한 현장연수 및 정보지원 제공활동 지원 (전국단체사업 : 118백만엔, 취농 · 취업지원사업 : 97백만엔)
 - 초 · 중학생 농촌체험학교 추진체제 정비, 문부과학성과 협력하여 모델지구 설치, 기타 체험경비지원 (어린이의 농업 · 농촌체험학습추진사업 : 296백만엔)
 - 농업법인 취직과 취업후의 직장정착을 위해 대학생등을 대상으로 한 법inne 취업체험실시 지원 (전국단체사업 : 118백만엔)
 - 농지확보 지원
 - 신규취농상담센터의 농지취득 관련 정보제공, 상담활동 지원
(전국단체사업 : 118백만엔, 취농 · 취업상담창구정비사업 : 358백만엔)
 - 규모축소농가로부터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구입(임차)한 농지를 취농자에게 장기용자로 판매 (농지보유합리화촉진사업 : 25,040백만엔)
 - 신규취농자의 초기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 · 기계시

설 등(축산의 경우 농장)을 리스방식으로 지원
경영구조개선대책사업 : 17,667백만엔, 축산경영활성화사업 : 734백만엔

4. 시사점

- 일본의 신규취농제도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농업 · 농촌활력 부여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후계농업인제도가 40세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연령제한을 64세까지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
- 다양한 여타산업에서의 경험을 농업과 접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 · 판매까지를 연계한 토탈 농업의 실현 가능
- 또한, 중장년층의 적극적인 정주는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대부분의 신규 취농자가 연고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고지정착위주의 정책적 접근이 중요함
- 현지후계자가 없는 농가로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능력 있는 유산계층의 농촌유입 촉진 시책 강화 필요
- 유관기관 · 사업 등을 연계한 패키지화 사업으로 추진이 바람직함.
- 단순한 상담과 용자사업이외에 안정적인 취농정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농지보유합리화사업 등 관련사업을 패키지화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시너지효과 창출
- 특히, 지역활력 부여차원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익기관과의 연계가 특징으로 사업간, 기관간(민간단체 등 포함)연계시스템 개발 필요
- 중앙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 도 · 농교류, 조기 정년퇴직 및 실업문제 등에 대응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 협력사업으로 추진
- 일본의 경우,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문부성의 청소년 농촌체험프로그램, 후생노동성의 실업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고 있음.